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추가하고,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수집·활용을 규정하는 한편, 인파사고의 예방을 위해 기지국접속정보를 정보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 아울러,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·조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·통제를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긴급구조통제단을 기능중심으로 개편(안 제55조)

조직체계가 복잡하여 비효율적인 긴급구조통제단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4부·1대에서 3부로 단순화 함

* (현행) △총괄지휘부, △대응계획부, △자원지원부, △긴급복구부, △현장지휘대

(변경) △대응계획부(총괄지휘+대응계획), △자원지원부(자원지원+긴급복구), △현장지휘부

※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'긴급구조현장 지휘규칙' 개정(22.12)을 통해 시범운영 중

나.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원 현실화(안 제65조)

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·소방서에
상시 구성·운영하는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을 재난초기 현장지휘에
필요한 기능(상황조사를 위한 드론운용 등)을 추가하고 실제현장에 부합
하도록 현실화함

* (현행) △신속기동△자원지원△통신지휘△안전담당△경찰연락관△의료기관연락관
(변경) △현장지휘△자원지원△통신지원△안전관리△상황조사△구급지휘

※ **지원기관 연락관은 대형재난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시에 실제 파견·운용**

다. 복구비 선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(안 제73조의3)

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
추가됨에 따라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*에 소상공인을 추가

* (자연재난) 「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1항1호 가~리목
(사회재난) 「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제1호

라.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설치·운영(안 제73조의7)

재난안전데이터, 재난관리정보, 안전정보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
하여 현행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로
변경하여 기능을 확대*하고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분과협의회를 추가로
설치함

* (안전정보협의회) 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·공개·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→
(재난안전정보협의회) 관리대상을 재난관리정보, 재난안전데이터까지 포함

마.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및 제공방법 지정(안 제83조의2)

접속정보*의 요청권자에 행안부장관·지자체장을 추가하고, 정보 요청 및 제공 방법(전자우편,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)을 규정함

* 군중 밀집도 분석을 위한 기지국의 위치정보, 접속단말 수 등

바.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(안 제83조의3)

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연계·공유하는 데이터의 최신성·정확성·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며 데이터 제공 중단 시 3개월 전에 행안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함.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스템 이용자가 불편사항,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

사.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업무 규정(안 제83조의4)

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,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운영,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·수행 및 활용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4항제1호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제2조”를 “「비상대비 자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55조제3항 중 “총괄지휘부·대응계획부·자원지원부·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”를 “대응계획부·현장지휘부·자원지원부”로 한다.

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으”를 “임무를 분담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현장지휘
2. 자원지원
3. 통신지원
4. 안전관리
5. 상황조사
6. 구급지휘

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“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”을 “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7제4항 중 “효율적인 안전정보”를 “법 제3조 10호의 재난관리 정보, 법 제3조 13호의 재난안전데이터 및 법 제66조 9호의 안전정보(이

하 “재난안전정보”라 한다)”로, “안전정보 공동이용”을 “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”으로, “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””를 ““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”라 한다) 및 실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분과협의회(이하 “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분과협의회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”를 “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안전정보”를 각각 “재난 안전정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”를 “재난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분과협의회”로, “고위 공무원”을 “고위공무원 이상”로 하고, 같은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”를 “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안전정보”를 “재난안전정보”로, “부서의 과장급”을 “국장급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안전정보”를 “재난안전정보”로, “부서의 장”을 “부장급 이상 직원”으로 한다.

제73조의7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⑧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분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

2.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

제73조의7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, 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”를 “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분과협의회”로 한다.

제83조의2제1항 중 “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중앙대책본부장,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74조의3제1항, 제2항 또는 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법 제74조의3제1항, 제2항 또는 제7항”으로, “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”을 “중앙대책본부장,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3항”을 “중앙대책본부장,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4조의3제3항 및 제7항”으로, “제3항 각 호의”를 “정보를 제공하는”으로 한다.

제83조의3, 제83조의4, 제83조의5를 각각 제83조의5, 제83조의6, 제83조의7로 하고, 제83조의3, 제8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3조의3(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·공유하는 소관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,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·공유하는 소관 재난안전데이터의 내용을

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자가 재난안전데이터의 등록누락, 이용 불편사항 및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오류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.

제83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센터) 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관리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
2.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
3.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운영
4.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제 발굴·수행 및 활용기술 개발
5.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교육 및 민간 협력
6. 그 밖에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연계·분석·활용·공유·공개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재난관리자원의 비축 · 관리 등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1. 「 <u>비상대비자원 관리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. (생략)	제43조(재난관리자원의 비축 · 관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「 <u>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----- -- 2. (현행과 같음)
제55조(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· ② (생략)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, 중앙통제단에는 <u>총괄지휘부 · 대응계획부 · 자원지원부 · 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</u> 를 둔다. ④ (생략)	제55조(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 <u>대응계획부 · 현장지휘부 · 자원지원부</u>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제65조(긴급구조지휘대 구성 · 운영)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<u>사람으로</u> 구성하여야 한다. 1. <u>신속기동요원</u> 2. <u>자원지원요원</u> 3. <u>통신지휘요원</u>	제65조(긴급구조지휘대 구성 · 운영) ① ----- ----- <u>임무를 분담하는 자</u> -----. 1. <u>현장지휘</u> 2. <u>자원지원</u> 3. <u>통신지원</u>

4. <u>안전담당요원</u> 5. <u>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</u> 6. 「<u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</u>」 제26조에 따른 <u>권역응급의료</u> <u>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</u> ②·③ (생략) 제73조의3(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)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자연재난의 경우: 「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,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2. (생략) ②·③ (생략) 제73조의7(안전정보의 수집·공개·관리) ① ~ ③ (생략)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<u>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·공개·관리</u> 및 <u>공동이용 활성화</u> 등을 위하여 <u>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</u> (이하 “<u>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</u>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	4. <u>안전관리</u> 5. <u>상황조사</u> 6. <u>구급지휘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3조의3(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제4조제1항</u> <u>제1호가목부터 라목</u>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3조의7(안전정보의 수집·공개·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법 제3조 10호의 재난관리정보</u>, <u>법 제3조 13호의 재난안전데이터</u> 및 <u>법 제66조 9호의 안전정보</u>(이하 “<u>재난안전정보</u>”라 한다)--- <u>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</u> --- “<u>재</u>
---	--

있다.

⑤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안전정보의 구축, 표준화,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
2. 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, 방법,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
3. 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안전정보의 수집·공개·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⑥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⑦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

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”라 한다) 및 실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분과협의회(이하 “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분과협의회”---).

⑤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-----.

1. 재난안전정보-----
2. 재난안전정보 -----
3. 재난안전정보 -----
4. ----- 재난안전정보-----

⑥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분과협의회----- 고위공무원 이상-----.

⑦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

2.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

<신 설>

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1. -----
----- 재난안전정보 -----
----- 국장급 -----

2. -----

----- 재난안전
정보 ----- 부
장급 이상 직원 -----

⑧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분과
협의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
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
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
체에서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
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
이상 공무원

2.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을
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기관의 재난안전
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
부서의 장 및 민간전문가

⑨ ----- 제8항 -----
----- 재난안전정보공
동이용협의회의 및 재난안전정보

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83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)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,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.

②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,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⑤ ~ ⑧ (생략)

<신설>

공동이용분과협의회-----.

제83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) ① 중앙대책본부장,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74조의3제1항, 제2항 또는 제7항-----

-----.

② 법 제74조의3제1항, 제2항 또는 제7항-----

----- 중앙대책본부장,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장-----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중앙대책본부장,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4조의3 제3항 및 제7항-----
정보를 제공받는 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83조의3(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

<신 설>

의4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·공유하는 소관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,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제7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·공유하는 소관 재난안전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자가 재난안전데이터의 등록누락, 이용 불편사항 및 품질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오류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.

제83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센터)
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	<u>1.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관리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</u> <u>2.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</u> <u>3.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 운영</u> <u>4. 재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제 발굴·수행 및 활용기술 개발</u> <u>5.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교육 및 민간 협력</u> <u>6. 그 밖에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연계·분석·활용·공유·공개에 필요한 사항</u>
<u>제83조의3</u> (생략)	<u>제83조의5</u> (현행 제83조의3과 같음)
<u>제83조의4</u> (생략)	<u>제83조의6</u> (현행 제83조의4과 같음)
<u>제83조의5</u> (생략)	<u>제83조의7</u> (현행 제83조의5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124